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나39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나391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1664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조성오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변론종결 2022. 3. 8.

판결선고 2022. 4.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166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8. 접수 제99329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9호증의 1,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수경, 판사 이상아

별지